■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 8.>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처리 일자	처리 기간 경찰서장 허가 7일 시·도경찰청장 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예술소품용 총포 등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총포내용	총종(銃種)·형식	[ ]산탄외대 [ ]산탄상하쌍대 [ ]산탄수평쌍대 [ ]삼연쌍대 [ ]라이플 [ ]공기총스프링 [ ]공기총(펌프) [ ]공기총(가스) [ ]권총회전 [ ]권총착탈 [ ]공간 [ ]원절 [ ]중절 [ ]레바 [ ]수동장전 [ ]자동장전 [ ]기타			
	총명	제조국명		명칭	
	구경	공칭 번(구경)		총신의 길이 cm	
		실측치수 mm		총 전체의 길이 cm	
	대체총신	구경 번(구경) mm		총신의 길이 cm	
	총번(銃番)	제 호		총중량	kg
	적합실탄 공포탄명			탄창장전 탄수	개

용도	[ ]호신 [ ]수렵 [ ]유해조수 구제 [ ]사격경기 [ ]어획 [ ]건축 [ ]공업 [ ]기타 산업 [ ]신호·구명 [ ]도살·마취 [ ]시험·연구 [ ]예술소품용

입수경위	양 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또는 직위	주소
		허가청	업소명
		허가번호 제 호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양도양수연월일	년 월 일
	수입내용	수입면장번호 제 호	수입연월일 년 월 일
		수입국명	수입지
	임 대	임대업소명	임대업소 주소

보 관	**총포 소지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보관연월일 년 월 일
	보관처	보관책임자 (서명 또는 인)

허가증 발급		조사복명		신원·전과 조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가스발사총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 세로 3㎝)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 ~ 5,000원

유의사항

1. 총포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허가 총포의 경우는 총포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 총포로서 상품화할 경우에는 총포 소지 허가증 반납증명 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 총포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2.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